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42호 2020. 10. 2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71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72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 5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950호 제22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7
- 삼척시 공고 제95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자 지정 공고 ----- 8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0 - 171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철거)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 10. 23.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2504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0.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2484-85		20201023	건물철거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2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362-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2504	20201023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토산리 77-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738	20201023	가설건축물	20090807	자연지형 명칭 반영(산맥)
4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445, 479-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561	20201023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 명칭활용
5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산277-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안길 608	20201023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지역위치 복합활용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종전주소	계						
폐지	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2484-85	계	5건	20201023	건물철거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362-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2504	20201023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토산리 77-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738	20201023	가설건축물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신매)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랑곡리 445, 479-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561	20201023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산277-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안길 608	20201023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 지역위치복합활용	

삼척시 고시 제2020 - 172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23.

삼척시장

- 고시일 : 2020. 10. 23.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변경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 의견 수렴한 날부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0일 이내	14일 이상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10일 이내

<변경의 경우>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변경 내용 및 절차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서면 동의 받은 날로부터 (서면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미만)	서면 동의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계(☎033-570-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조서	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동일 도로명	변경 사유
	삼척로 (1차종속구간)	로	원덕읍	시작지점	길이 (m)	폭 (m)				
	갈남리 산65-1	472	갈남리	255	4	20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삼척시 공고 제2020-950호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223회 삼척시의회(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19.

삼척시장

제22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부의안건]

1.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기획감사실)
2. 202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
3.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복지정책과)
4.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5. 삼척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
6.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
7.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과)

삼척시 공고 제2020-95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자 지정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제4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자 지정」에 대한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삼척시장

1.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성명·주소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강원도 삼척시 연장 1길 33-72, 교동)

2. 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6번지 일원
- 면적 : 15,531㎡

3. 특화사업의 내용

- 소방방재산업 기반구축 및 경쟁력 강화사업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 등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에너지정책과(☎ 033-570-3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